

회계규정 개정(안)(수정)

2017 . 5. 24.

문서번호	경영지원팀-12224	선임	팀장	본부장	대표이사		
결재일자	2017.05.30.	05/24 서현교	05/24 신현정	05/30 박진배	05/30 이근		
공개여부	공개	협 조		선임			
방침번호	대표이사방침 제 (2094)호		05/24 김경아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 내 외 협력현황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 업 비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토여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시 민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옴 브 즈 만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법 령 규 정 : 교통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재해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기 타 : 고용효과 <input type="checkbox"/> 노동인지 <input type="checkbox"/> 균형인지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성인지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유지관리 비용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타 자 원 의 활 용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 간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관 계 기 관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 련 단 체 : 유 <input type="checkbox"/> ()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계규정 일부 개정(안)

재단의 회계 및 재무, 계약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맞는 업무수행을 하고자 함

1. 제안근거

- 회계관계자 직명 및 월계표 보고 방법 보완
 - 회계관계자의 직명을 구(舊) 조직 직명에서 개편된 조직의 직명에 맞게 변경
 - 전산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월계표 보고 방법으로 보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약칭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17.01.28.)에 따른 재단 회계규정 「8장 계약」 개정

2. 제안이유

- 회계관계자 직명 중 “회계책임자-창의경영실장”을 회계부서의 본부장으로 변경
 - 구(舊)조직의 직제인 창의경영실장을 현조직의 직제에 맞는 경영본부장으로 변경
- 일계표 및 월계표의 작성을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자료로 대체하여 보고
 - 재단의 모든 수입, 지출은 전산회계프로그램을 통해 복식부기 처리되고, 그 자료의 보관은 전산정보팀의 통제 하에 재단 서버에 보관되므로 전산자료로 대체하여 보고함.
- 선급금의 지급기준 중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 요령 “2.선금지급대상-2)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관련 규정 변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3~26조(입찰 대상 및 수의계약 관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53조(계약의 이행 보증)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 관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3. 주요골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부서의 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 1호)
- 매월 초 전월 월계표를 분임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자료로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
- 선급금의 지급기준 중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금액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2조 5호)
- 계약서의 작성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계약, 경매에 부치는 경우 등이며(제61조),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제8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95조)

4. 참고사항

- 절 차 : 이사회승인
- 시행일 : 이사회 승인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6조(회계관계자 직명 지정) 대표이사는 회계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자 직명을 지정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책임자 - 창의경영실장 2. 분임회계책임자 - 회계부서의 장 3. 분임회계원 - 회계담당자 4. 전도금출납원 - 회계담당자 5. 출납담당자 - 금전의 출납을 담당하는 직원 	<p>제6조(회계관계자 직명 지정) 대표이사는 회계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자 직명을 지정 운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계책임자 - 회계부서의 본부장 2. 분임회계책임자 - 회계부서의 장 3. 분임회계원 - 회계담당자 4. 전도금출납원 - 회계담당자 5. 출납담당자 - 금전의 출납을 담당하는 직원
<p>제13조(일계표) 일계표는 계정과목 집계표에 의하여 작성하며, 매월 초 전월 월계표를 분임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조(일계표) 일계표는 계정과목 집계표에 의하여 작성하며, 매월 초 전월 월계표를 분임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전산자료로 보고 할 수 있다.</p>
<p>제22조(선급금) 반대급부 또는 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성질의 비용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6. ~ 9. (생략) 	<p>제22조(선급금) 반대급부 또는 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성질의 비용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6. ~ 9. (생략)
<p>제61조(계약서의 작성생략)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p>	<p>제61조(계약서의 작성생략)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p>

현행	개정안
<p>야 한다.</p> <p>1.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p> <p>2.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p> <p>3. 관영 관허요금 또는 요율에 의하여 계약을 할 때</p> <p>4. 정부투자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투자기관 또는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때</p> <p>제62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제외) 현금, 국공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서,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계약금의 10/10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지급각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p> <p>제65조(예정가격의 비치)</p> <p>① (생략)</p> <p>②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의</p>	<p>야 한다.</p> <p>1.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p> <p>2. 경매에 부치는 경우 (제2호 신설에 따라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변경한다.)></p> <p>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p> <p>4. 관영 관허요금 또는 요율에 의하여 계약을 할 때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p> <p>5. 정부투자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투자기관 또는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때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제62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제외) 현금, 국공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서,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계약금의 10/10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지급각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p> <p>제65조(예정가격의 비치)</p> <p>① (생략)</p> <p>②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의</p>

현 행	개정안
<p>계약 및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p>	<p>계약, 협상에의한계약 및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p>
<p>제72조(지명경쟁입찰대상자의 지명)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2조(지명경쟁입찰대상자의 지명)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p>
<p>제73조(수의계약 집행기준)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p>	<p>제73조(수의계약 집행기준)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p>
<p>1. ~4. (생략)</p> <p>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p>	<p>1. ~4. (생략)</p> <p>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 5천만원 이하)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p>
<p>6.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3천만원을 초과</p>	<p>6. <삭제></p>

현 행	개정안
<p>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 기타 계약의 경우라도 경쟁입찰에 부쳐서는 실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오히려 불리한 가격이나 조건, 납품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7. ~8. (생략)</p> <p>9.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광공업규격표시물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등급사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동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그 생산자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거나 이로부터 구매할 경우</p> <p>10. 생략</p> <p>1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공지구 입주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할 경우</p> <p>1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할 경우</p> <p>1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경우</p> <p>14. 생략</p> <p>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계약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p>	<p>7. ~8. (생략)</p> <p>9. <삭제></p> <p>10. 생략</p> <p>1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지구 입주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할 경우</p> <p>1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 또는 직접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p> <p>13.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p> <p>14. 생략</p> <p>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제1호 내지 제14호 이 외의 계약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p>

현 행	개정안
<p>제75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다른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p> <p>제85조(대가의 지급) ①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맡은 자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본문의 경우 계약대상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p> <p>제8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생략)</p> <p>② 하자담보의 책임기간 및 보증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p> <p>제93조(지체상금)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p>	<p>우</p> <p>제75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다른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p> <p>제85조(대가의 지급) ①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맡은 자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본문의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p> <p>제8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생략)</p> <p>② 하자담보의 책임기간 및 보증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제93조(지연배상금) ①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p>

현 행	개정안
<p>지체 상금은 공사는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 구매는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는 1000분의 2.5, 운송보관은 1000분의 5를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p> <p>제9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표이사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때 지체 상금은 공사는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 구매는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는 1000분의 2.5, 운송보관은 1000분의 5를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p> <p>제9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대표이사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p>

현행	개정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